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례안 검토 보고서

2000. 12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 제출

2. 제안 및 회부일자

- 제안 : 2000년 11월 29일 제출
- 회부 : 2000년 11월 30일

3. 제안이유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,
- 이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은 국고보조금, 도의 출연금, 이자수입, 기타 기금 운용 수익금등으로 함
-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,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, 기타 자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등으로 함
-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·운용하되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, 국·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이나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을 함

-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자활공동체, 자활사업실시기관, 시·군등에 지원함
-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내에서 5년거치 후 5년균등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연 5%로 함
-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 보장 담당사무관으로 함
- 기금의 결산보고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함

5. 검토의견

-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,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취지와 목적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여 기금의 설치·운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,
- 일부 조문상 미비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금계좌 설치 대상은 행의 지정과 결산 및 보고서 제출 규정에 대하여는 수정 보완을 가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